

### 경운대학교 취업약정형교육운영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취업약정형교육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심의한다.

1. 취업약정형 교육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취업약정 산업체와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
4. 취업약정형 지원체제 및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
5. 취업약정형 교육 평가 계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
6. 취업약정형 교육을 위한 각 대학 및 산업체 협력체제에 관한 사항
7. 기타 취업약정형 교육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, 인재개발처장, 각 취업약정형 교육과정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과 산업체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. <개정 2021.10.01.>
- ③ 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학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 <개정 2021.10.01.>
- ④ 취업약정형 교육과정별로 교육과정 구성, 효율적인 학사운영, 학생지도 등의 중요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취업약정형 교육과정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 소집)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(의사 및 결의)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7조(결의사항 조치)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취업약정형 교육과정별 운영위원회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각 교육과정별 참여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교육과정별 운영위원회는 해당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의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각 운영위원회는 연구·심의한 주요사항을 취업약정형 교육운영위원회 회의 시 보고 및 부의 하여야 한다.

제9조(행·재정 지원) ① 취업약정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에 따른 예산

을 책정할 수 있으며,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각 교육과정별 주임교수에게는 수당 지급, 책임시간 감면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, 지급액 및 반영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